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.

발 의 자 : 박형수·이성권·조배숙
강승규·곽규택·안철수
박성민·안상훈·김소희
윤용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을 학생이 개인적 필요·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,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인구감소지역 등의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 수와 교원 수가 일반 고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,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.

이에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, 소규모고교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특별수당 지급, 인사상 우대조치 근거를 마련하며,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규모고교 학생의 실질적

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3 신설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3(소규모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) ① 이 법에서 “소규모 고교”란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(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) 중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,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교원(이하 “장기근무교원”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무교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특별수당의 지급 기준·방법, 제3항에 따른 우대

조치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8조의3(소규모고교의 고교학</u> <u>점제 운영 지원) ① 이 법에서</u> <u>“소규모고교”란 「지방자치분</u> <u>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</u> <u>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</u> <u>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</u> <u>(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</u> <u>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</u> <u>교를 포함한다) 중 전체 학생</u> <u>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학급</u> <u>수가 6학급 이하인 학교를 말</u> <u>한다. 다만, 지역 여건, 학교 특</u> <u>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</u> <u>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</u> <u>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소규모고교에</u> <u>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</u> <u>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교원</u> <u>(이하 “장기근무교원”이라 한</u> <u>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</u> <u>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 <u>③ 교원의 임용권자는 장기근</u> <u>무교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</u>

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
규모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원활
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
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특별수당의
지급 기준·방법, 제3항에 따른
우대 조치의 내용·방법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